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72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0년 3월 19일
4. 회부일자 : 2020년 3월 20일

II.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 지원, 시민 안전 강화 등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조 3,077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9조 5,728억 9천 4백만원에
 대비하여 1.9%(7,348억 4천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조 6,245억 8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204억 2천 6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조 6,831억 5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144억 1천 3백만원) 증가하였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기정대비증감 | % |
|------|------------|------------|---------|-----|
| 계 | 40,307,734 | 39,572,894 | 734,840 | 1.9 |
| 일반회계 | 27,624,583 | 26,904,157 | 720,426 | 2.7 |
| 특별회계 | 12,683,151 | 12,668,737 | 14,413 | 0.1 |

3.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경제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8,238억 8천 5백만원 대비 국고보조금 50억원이 증가한 8,288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은 당초 6,323억 1천 5백만원에서 210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6,533억 9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9억 7천 5백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1억원 등 2개 사업에서 210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기정대비증감 | % |
|---------|---------|---------|--------|-----|
| 계 | 653,390 | 632,315 | 21,075 | 3.3 |
| 행정운영경비 | 1,432 | 1,432 | - | - |
| 재 무 활 동 | 187 | 187 | - | - |
| 사 업 비 | 651,771 | 630,696 | 21,075 | 3.9 |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편성 배경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었고(2월 23일),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¹⁾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룸(3월 11일).
- 그 결과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침체와 수출 감소로 민생 여건과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²⁾.
-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관련 업종인 여행업, 숙박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소비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내수 업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³⁾에 따르면 산업과 업종을 막론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1) 3월 20일 현재 전세계 확진자는 24만 5,876명이고 사망자는 10,051명임. 이중 국내 확진자가 8,552명(서울시 299명)이고 사망자는 97명(서울시 0명)임.

2)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2월 27일)’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일부 해외기관(JP모건·피치)은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하였음.

3) 서울시가 관내에 소재한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100업체를 대상으로 2주간(2020. 02.17.~02.28)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서울 소재 기업 피해 상황>

(단위 : 개사, %)

| 구분 | 여행업 | 숙박업 | 음식점 | 교육·강의 | 식료품 제조업 | 예술·스포츠·여가업 | 운수·창고업 | 의류·의복 제조업 | 도매·소매업 | 출판·인쇄업 | 섬유·제조업 | 정보통신업 |
|-------------|-------|-------|-------|-------|---------|------------|--------|-----------|--------|--------|--------|-------|
| 조 사 업 체 | 130 | 122 | 153 | 33 | 55 | 102 | 104 | 75 | 199 | 28 | 39 | 60 |
| 피 해 업 체 | 126 | 117 | 144 | 23 | 45 | 81 | 81 | 51 | 132 | 17 | 23 | 23 |
| | 96.9% | 95.9% | 94.1% | 87.9% | 81.8% | 79.4% | 77.9% | 68.0% | 66.3% | 60.7% | 59.0% | 38.3% |
| 매 출 감 소 규 모 | 88.8% | 64.7% | 60.3% | 53.0% | 50.0% | 48.0% | 47.9% | 46.2% | 45.9% | 44.1% | 41.4% | 38.1% |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검역·진단·치료 등 대응 조치를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3월 17일 국회 통과).

<정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 |
|----------------------------------------|--------------|
| ①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 2.1조원 |
| 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마스크 공급역량 강화 | 0.2조원 |
| ②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 1.9조원 |
| ②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 4.1조원 |
| ①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 3.1조원 |
| ②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등 | 0.6조원 |
| ③ 코로나19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 0.4조원 |
| ③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 3.5조원 |
| ①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 2.9조원 |
|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 0.6조원 |
| ④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 1.2조원 |
| ①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 0.2조원 |
|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0.2조원 |
| ③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및 교부세·교부금 정산 등 | 0.8조원 |

- 서울시는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소비감소, 민생여건 악화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순세계잉여금(3,573억원), 국고보조금(3,775억원)을 재원으로 총 7,34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였음.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재난관리 기금 여유재원(1,271억원)을 포함해 8,619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나. 편성의 적정성 검토

-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효과의 가시성·시급성·집행가능성을 편성 원칙으로, 재난관리기금과 함께 ▶ 시민의 민생안정 확대 지원(7,139억원),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조기 피해 극복을 위한 신속 지원(835억원), ▶ 방역을 통한 시민안전 강화 지원(645억원) 등 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계획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 | | |
|-------------------------|---------------------------------------------------------------------------------------------------------------------------------------------------------------------------------------------------------------------------------------------------------------------------------------------------|---------|
| 민생 안정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118만 가구 30~50만원 지원, 3,517억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 대상 소비쿠폰(1,712억) ▶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양육 전환 지원(96억)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43억) | 7,139억원 |
| 피해 업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 긴급자금 융자 지원(462억원) ▶ 서울형 착한 임대인 건물보수비용 등 지원(23억원) ▶ <u>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피해보상(10억원)</u> ▶ <u>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201억원)</u> ▶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50억원) ▶ 영세 여행업체 위기극복 상품 개발비 지원(50억원) | 835억원 |

| | | |
|-------------------------|------------------------------------------------------------------------------------------------------------------------------------------------------------------------------------------------------------------------------------------------|-------|
| 시민 안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압 및 일반구급차 확충(13대, 25억원) ▶ 입원·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약 4천명, 205억원) ▶ 의료기관집단감염 고위험직업군 마스크 지원(천3백만장, 200억원) ▶ 대중교통 등 방역 지원(143억원) ▶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방역 지원(72억원) | 645억원 |
|-------------------------|------------------------------------------------------------------------------------------------------------------------------------------------------------------------------------------------------------------------------------------------|-------|

- 이 중 경제정책실의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 매장 피해보상(9억 8천만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201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한 기준을 갖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엄격한 편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⁴⁾과는 달리 「지방재정법」에는 특별한 법률상 요건이 없음.
- 그러나,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인 감염병이고 이로 인한 소비 심리와 경기 악화는 경제침체와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 추가경정예산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제1호), ▶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들이 취지에 적합한지(적합성), 본 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해당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2021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세 입

- 2020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8,288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8,238억 8천 5백만원) 대비 5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서 서울시 지원액을 50억원으로 추정한 것이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총 2,000억원으로 피해심각지역(대구·경북)에 7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300억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시·도별로 배정하게 됨.
- 따라서 국고보조금 규모의 확정에 따라 추가 감추경 또는 간주처리가 필요하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성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라. 세 출

-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6,533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6,323억 1천 5백만원 대비 210억 7천 5백만원이 증액(3.3%)되었음.
- 세부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9억 7천 5백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1억원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
| 합계 | (×25,404) 653,390 | (×20,404) 632,315 | (×5,000) 21,075 |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 975 | - | 975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5,000) 20,100 | - | (×5,000) 20,100 |

2. 주요 사업 검토

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55쪽)

-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재산상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9억 7천 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단위 : 천원)

| 기정예산 | 추경예산(안) | 증감 | 산출내역 |
|------|---------|---------|------------------------------------------------------------------------|
| - | 975,000 | 97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75,000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방문 영업장은 방역과 휴업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과 ‘가맹점사업자’ 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대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맹사업 거래법 제2조)

▶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 휴업기간 중 최장 5일(방역 후 재개장 3일+인식 전환 소요일 2일)을 지원기간으로 하며, 일별 지원 상한액은 임대료 18만원, 인건비 21만원으로 최대 195만원(1일 39만원×5일)이 지원됨.
 - 임대료 상한액은 ‘2019년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 따라 서울시 소재 소규모 상가의 월 평균 임대료(㎡당 54,700원)와 평균 임대면적(99㎡)을 고려해 산출하였음.
 - 인건비 상한액은 상시인력 3명(점주 포함)을 기준으로 8시간 노동시간에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을 가산해 산출하였음.
- 지원대상 규모로는 이미 발생한 휴업 영업장(3월 4일 기준 120개)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감안해 500여개 영업장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 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정상화와 피해 극복을 위해 본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 소재 기업 피해 상황>

| 구분 | 전체 | 자영업(1인) | 소상공인(2인~9인) | 중소기업(10인 이상) |
|---------|-------------|------------|-------------|--------------|
| 조사업체 | 1,100개 | 84개 | 623개 | 393개 |
| 피해업체 | 869개(79.0%) | 73개(86.9%) | 514개(82.5%) | 282개(71.8%) |
| 매출감소 규모 | 56.4% | 69.9% | 52.9% | 47.8% |

- 다만, 집단 근무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영업장이 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영업장이 급증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사업 수요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월별 코로나19 확진자와 방문매장 현황>

|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
| 확진자수(명) | 299 | 7 | 85 | 207 |
| 방역사업장(개) * | 285 | 14 | 195 | 76 |

※ 출처 : 서울시 코로나19 상황판(3월 20일 기준)

*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 조치된 시설 중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은 제외하였음.

- 또한, 점주 소유 영업장에 대해서도 임대료 손실을 인정해 지원하는 것은 본 사업의 실손해(實損害) 보전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의 한계로 실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 본 사업이 소상공인의 소극적 손실까지 지원하려는 취지라면 인건비의 경우 무급 가족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한편, 정부는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 사업과 지원 대상이 유사한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지원 신청과 심사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372억원

(서울은 47억원 배정 예정, 피해점포의 80%는 대구·경북에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 | | 방문점포 | 휴업점포 |
| 점포 재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식품,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홍보·마케팅) 리플릿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마케팅 ○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등 | 3백 만원 | 1백 만원 |
| 공과금 관련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 |

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58쪽)

-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실직 예방과 생계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 기간에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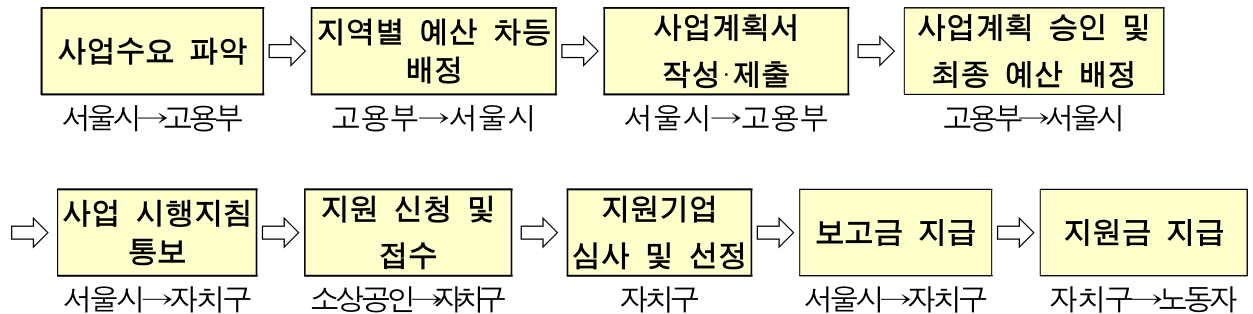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기정예산 | 추경예산(안) | 증감 | 산출내역 |
|------|----------------------------|----------------------------|--------------------------------------------------------------------------------------------|
| - | (x5,000,000) 20,100,000 | (x5,000,000) 20,1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5,000,000) 20,10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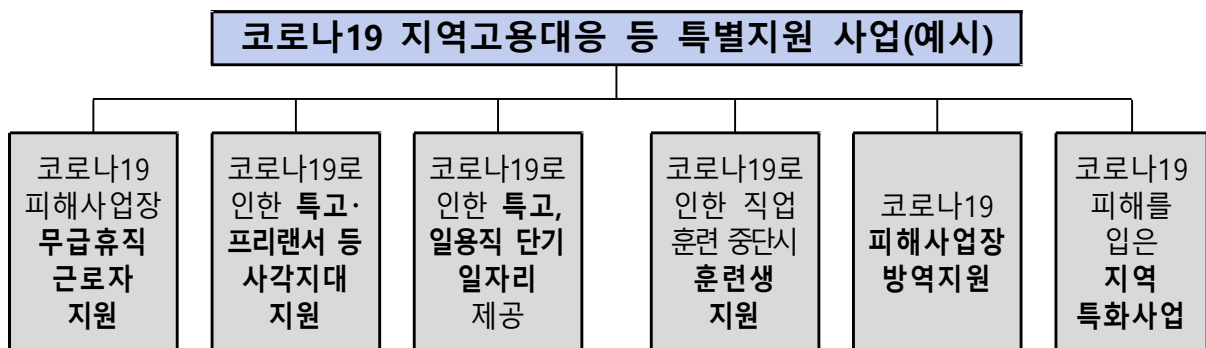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이하 ‘특별지원 사업’)을 포함하였음.

-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별 피해 정도와 사업 수요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차등 배정하고, 서울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자치구가 추진하는 구조이며, 총 2천억원의 예산 중 대구·경북에 700억원을 지원하고, 1,300억원을 나머지 시·도에 배분할 계획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 절차>



- 이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사업 유형 중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참고해 무급휴직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할 예정임⁵⁾.



5)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3월 23일까지임.

-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5명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에 대해 업체당 1명(여행업은 최대 2명)에게 최대 2개월 간 월 50만원(1일 2만 5천원)을 지원하게 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업종(업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업체) 중심
 - 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관광·여행사업, 벤처기업 등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명 미만 소상공인업체 무급 휴직자
- 지원요건 : 2020. 2월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2개월 간 매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업체당 1명 지원,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지원제외 사유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20,000명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유급휴직 지원제도가 중심이며, 무급휴직 지원제도는 휴직자 기준(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따라서 서울시의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무급 휴직 지원금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정상화에 필요한 핵심인력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소상공인 피해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 피해 규모와 업종 등이 지역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지원금이 안분되어 지역별로 불요불급한 지원이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노동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비를 자치구마다 지원할 계획이나(총 1억원, 자치구별 4백만원 배정), 홍보채널의 다양화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홍보 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한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해지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나, 서울시의 특별지원 사업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어 향후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특별지원 사업에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월 50만원)’, ‘실직자(특고,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월 180만원)’ 을 예시하고 있음.

| | |
|-------|--------------|
| 담당조사관 | 연락처 |
| 김성만 | 02-2180-8055 |